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347
----------	-------

발의연월일 : 2025. 9. 29.

찬성자 : 안철수 · 이종배 · 윤영석
조은희 · 김기현 · 이종욱
최은석 · 김상훈 · 신성범
김승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무발명보상금을 재직 중에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퇴직 후에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직무발명보상금은 종업원이 완성한 직무발명의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한 후 승계의 대가로 받는 보상금임을 고려할 때 근로소득과는 그 성격이 다르며,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구분할 시 누진세율의 적용 등으로 높은 세금이 부과되어 오히려 혁신적인 기술개발 사례가 등장할 기회를 억누르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모든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분리과세하도록 함으로써 유사 지식재산권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활발한 직무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12조제5호 등).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어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라목 본문 중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퇴직한 후에 지급 받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목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목에 1) 및 2)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보상금. 다만, 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보상금은 제외한다.
- 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다만, 보상금을 지급한 산학협력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

는 자가 받는 보상금은 제외한다.

제14조제3항제8호가목 본문 중 “제22호, 제22호의2”를 “제22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21조제1항제27호 및”을 “제21조제1항제22호의2 및 제27호와”로 한다.

제20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제2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의2. 직무발명보상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어목, 같은 조 제5호라목, 제14조제3항제8호, 제20조제1항제5호 및 제21조제1항제2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 세하지 아니한다.	제12조(비과세소득)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소득	3. ----- ----- -----
가. ~ 서. (생 략)	가. ~ 서. (현행과 같음)
어. 「발명진흥법」 제2조제2 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 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삭 제>
1)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 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 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 용자등(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등”이라 한다)으로 부터 받는 보상금. 다만, 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	

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
는 보상금은 제외한다.

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
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
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
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
에 따라 받는 보상금

저.·처. (생 략)

4. (생 략)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 다. (생 략)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
직원이 퇴직한 후에 사용
자등 또는 산학협력단으로
부터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
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
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저.·처.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발명진흥법」 제2조제2
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퇴직
한 후에 지급 받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직무발명
보상금”이라 한다)-----

<단서 삭제>

액. 다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신 설>

<신 설>

1)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보상금. 다만, 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보상금은 제외한다.

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다만, 보상금을 지급한

[illegible]

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 나. (생략) 다. <u>제21조제1항제27호</u>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타 소득 라.·마. (생략) 9. (생략) ④ ~ ⑥ (생략)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4. (생략) 5. <u>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u>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u>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u>) 6. (생략) ② · ③ (생략)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	-----. -----. -----. -----. -----. -----. 나. (현행과 같음) 다. <u>제21조제1항제22호의2 및 제27호와</u>----- ----- 라.·마. (현행과 같음) 9.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근로소득) ① ----- -----. 1. ~ 4. (현행과 같음) <u><삭 제></u> 6.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기타소득) ① ----- -----
---	--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22. (생략) <u>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u> 23. ~ 27. (생략) ② ~ ⑤ (생략)	----- ----- ----- -----. 1. ~ 22. (현행과 같음) <u>22의2. 직무발명보상금</u> 23. ~ 27.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